

희년 공동체와 한국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정중호(계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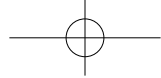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1. 서론

‘세계화 시대의 성서적 가치’라는 큰 주제 속에서 ‘희년 공동체’라는 주제를 택한 이유는, 첫째, 희년 공동체가 이 땅에서 자기 조정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를 이야기하기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기에 한국의 경험을 세계인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재편(The reshaping of world)’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제시한 ‘세계 5대 리스크’ 가운데 ‘소득 불균형 확대’와 ‘구조적 실업 증가’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꼽았다. 이처럼 세계

희년 공동체와 한국 | 정중호 93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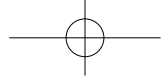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는 빈부격차의 문제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해지고 있는 노동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2008년 경제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모순이 드러나고 금융자본의 투기적 탐욕이 세계의 약자들을 착취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오늘날 빈부격차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공동체 화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공동체의 화합과 화목을 저해하며 균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차별’이다. 그래서 공자는 위정자의 책임을 “적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不患寡而患不均)”이라고 했다.¹⁾ 그런데 비정규직은 공공연한 차별이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데도 정규직보다 대우나 보장 면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당하는 것이기에 마치 현대판 신분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현재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관계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노동자 가운데 32.6%가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²⁾ 한국 사회의 장점이 민족적 혹은 가족적 혹은 사회적 유대감이요 신뢰감인 ‘우리’ 정신인데 비정규직과 파견직은 이러한 유대감을 뿌리째 흔들어 버린다. 최근 일본의 현상을 여러 각도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현재의 이러한 경제체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다보스 포럼처럼 새로운

※ 본 논문은 제9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강연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1) 論語 季氏 편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나온 말로,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뜻이다.
- 2) 통계청 자료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의하면 2013년 하반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노동자 수 1,824만명 가운데 32.6%인 5,946,000명이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 3) 기무라 다다시마 도쿄대 교수가 실시한 대인 신뢰감의 국제 비교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을 신뢰한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핀란드가 73.6%, 한국이 48.2%, 일본이 29.27%였다. 기무라 다다시마(木村忠正), “미디어성’ 본격화의 해,” 『NIRA 정책연구, 제18권 제12호 (2005), 31. 재인용. 진노 나오히코(神野直彦), 정광민 역,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푸른지식, 2013), 33-34.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모색의 방향을 살펴보면 제3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눔’을 중요시 여기는 경제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⁴⁾ 그런데 ‘나눔’이라면 희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경제체제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희망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희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희년이 주목받는 이유는 희년이 최하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흉년이나 재난을 당할 때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빚을 지게 되고 토지가 차압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부분적인 토지 차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희년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극빈층 뿐 만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희년에 의해서 부채 없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동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함께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제도이기에 희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희년은 공동체가 과열음을 일으키고 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감하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드러나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이 그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요인이다. 구약에서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타나지만 노비해방과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계약법전(출 22:25-27)과 신명기 법전(신 15:1-1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희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다 나오는 질문은 과연 희년이 현

4) 윗글.



실에서 실시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희년이 실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성경에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학자들 가운데도 희년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⁵⁾

한편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 희년을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레 27:16-25),⁶⁾ 그리고 슬로보하의 딸들 사건에서(민 36:1-12), 에스겔에서(겔 46:16-17) 희년을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희년의 핵심은 토지개혁이지만 채무면제와 노비해방에 관해서는 시행된 사례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느헤미야의 경우(느 5:1-13)는 채무면제를 시행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록 나중에 다시 붙잡아 오기는 했지만 노비를 전격적으로 해방시킨 사례로는 시드기야 왕에 의한 노비해방 사건을 들 수 있다(렘 34:8-22).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서로 해서 희년이 현실에서 실시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다.⁷⁾

이스라엘 이외 지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채무면제 사건과 노비해방 사건을 찾아 볼 수 있다. 채무면제 사건으로서는 주전 약 2350년 경 수메르 도시국가인 라가쉬(Lagash)의 왕 우루-이남기나에 의해 실행된 미샤룸(Misharum)을 들 수 있다.⁸⁾ 그리고 채무면제와 노비해방이 함께 실시된 사건으로는 주전 594년 아테네 집정관 솔론이 실시한 경제개혁과 로마의 호민관 리시니우스와 섹스티우스 시대에 실시된 사건들을

5) Robin J. DeWitt Knauth, "The Jubilee Transformation: From Social Welfare to Hope of Restoration to Eschatological Salvation,"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4).
 6) 정중호, 「레위기-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1999), 432-434.
 7) N. P. Lemche, "The manumission of slaves the fallow year the sabbatical year the jobel year," VT 26 (1976), 38. J. Milgrom,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2264-2270.
 8) 이종근, "히브리 성서의 희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 제도," 「구약논단」 1집 (1995), 75-90.



들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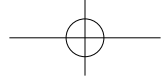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그런데 희년정신을 구체화 시킨 사례를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노비해방 사건으로는 고려시대 왕건과 광종의 노비해방, 그리고 이성계의 노비해방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채무면제 사건으로는 신라 문무왕의 경우와 조선시대 환곡제도 가운데 정퇴(停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토지개혁의 사례로는 이성계의 과전제(科田制)와 해방 후 농지개혁 등의 사례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희년정신을 현실 가운데 구체화 시킨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희년은 현실에서 실시될 수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 희년의 정신을 다시 분석해서 현대인이 희망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 등 희년과 관련된 한국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비교 연구하여 한국적인 희년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희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속선상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2. 한국의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 사례

1) 노비해방

구약의 노비 해방법(출 21:2-11; 신 15:12-18; 레 25:39-46)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모든 노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인으로 노비가 된 경우, 즉 ‘히브리 노비’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채무노비(debt-slaves)였다. 그리고 노비 해방법에서 제외되는 노비는 전쟁 포로로서 혹은 매매로 취득한 노비였으며 이들은 재산으로

9) Marvin L. Chaney, "Debt Easement in Israelite History and Tradition," in David Jobling et al (eds), *The Bible and the politics of exegesis: essays in honor of Norman K. Gottwald on his sixty-fifth birthday* (Cleveland: Pilgrim Press, 1991), 127-139.



간주되는 노비(chattel-slaves)였다.¹⁰⁾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불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노비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체제를 수용하는 이원적인 노비관이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¹¹⁾ 그러나 경제와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이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¹²⁾ 왜냐하면 이스라엘 노비에게 해방되지 않는 ‘종신 노비’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법전의 경우 노비가 해방될 경우 주인으로부터 곡식과 양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었다(신 15:12-14). 그러나 이 물품은 일시적인 생활비용이지 근본적인 생활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노비가 해방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신 노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성결법전의 경우에는 ‘종신 노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근본적인 생활대책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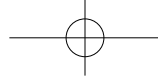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이처럼 노비문제의 핵심이 경제적인 것임을 밝혀주는 유사한 사례는 조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서 노비의 숫자가 급증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자유인인 양인은 조세와 부역과 균역에 시달려 너무 곤궁한데 노비는 이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노비가 되는 소위 ‘노비 투탁(投託)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¹³⁾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살펴볼 때 노비를 해방시키고 노비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노비 관리비용이 일꾼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때 일어나는 현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노비 격감 현상을 살펴볼 때 이러한 결론을 얻을

10) 레 25:44-45; Chirichigno, G. C.,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40.

11) 정중호, “구약의 노비관과 조선 초기 천민사상(天民思想),” 「구약논단」 48집(2013), 169-170.

12) Zipporah G. Glass,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OT* 91 (2000), 27-39; 정중호,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구약논단」 43집 (2012), 154-177.

13) 지승중, “朝鮮前期의 投託과 壓良爲賤,” 「사회와역사」 제8권 (1987.12), 17-19.



수 있었다.¹⁴⁾ 그러므로 조선에서 노비 해방은 인권이라는 측면보다 생활대책 여부와 관련되는 경제문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광종의 경우나 이성계의 경우 채무노비를 불법이라 단정하고 채무노비를 해방시켰다.¹⁵⁾ 즉 빚을 빌미로 노비를 만드는 것을 압량위천(壓良爲賤)이라 부르며 채무노비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채무노비를 불법화하고 채무노비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들면서 이스라엘 동족을 노비로 만들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동족이 노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품꾼같이 대우하며 7년 혹은 희년에 해방시키도록 하였다. 동족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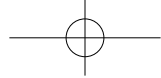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비를 해방시킨 또 다른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고려 태조 왕건의 경우와 고려 광종의 경우, 그리고 이성계의 경우 모두 왕권을 강화시키고 노비소유주인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⁶⁾ 동시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부역을 시킬 수 있으며 군인으로 징병할 수 있는 양인의 숫자를 증대시키려는 통치자의 의도에 의해 노비를 해방시켰다. 구약에 나타나는 노비 해방의 사례는 시드기야의 노비 해방 사건을 들 수 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계약법전과 신명기 법전을 따르면서 구원을 간청하는 의도에서 노비를 해방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왕권강화라는 목적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⁷⁾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귀족 중심 체제보다 왕권을 강화시킬 때 국가 전체의 역량이 강화되며 국가 안보를 도모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노비 해방의 요

14) 정중호, *윗글*(2012), 156-161.

15) 『高麗史』 88, 열전. 후비전, 대목왕후; 『太祖實錄』 2, 태조 원년 11월 갑오조.

16)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제44집 (2012), 185-188.

17) *윗글*, 188-195.



인 가운데 왕권강화라는 사회통합의 또 다른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통합이라는 요인이 노비 해방의 중요한 요인이 라면 구약의 노비 해방법을 현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신분제가 사라지고 노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노비 해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저임금 속에서 빚에 허덕이면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계층이 있고 이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기도 하다. 구약의 노비 해방법에는 안식일을 누리는 것과 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비와 이스라엘 노비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세종대왕은 천민사상(天民思想)을 이야기하면서 노비에게도 임신과 출산에 적어도 4개월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남편에게도 1개월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였다.¹⁸⁾ 그러므로 현대에도 여전히 구약의 노비해방법을 근거로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 및 채무의 탓에 갇혀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채무면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에 관한 성경 본문(출 22:25-27; 레 25:35-38; 신 15:1-11; 23:19-20)을 읽으면서 현대인들은 과연 이러한 충격적인 법이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채무면제를 실시하였고(느 5:1-13),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Misharum)을 비롯하여 아테네와 로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한국 역사 가운데서는 신라 문무왕의 경우와 조선시대 환곡제도 가운데 정퇴(停退)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에도 국제적으로 채무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악성채무국가에 대해서 채무면제를 실시한 경

18)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우도 있다.¹⁹⁾ 그리고 채무면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 상태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를 면제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경우에도 채무면제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2013년 5월 21일 정부가 신용불량자 10만 명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채무면제가 필요한 것이다. 비록 ‘도덕적 해이’라는 염려가 따르지만 사회통합과 경제적 기능 부전(不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법률로서 채무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면제는 분명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하기 힘든 충격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기존 경제의 병폐를 치유하고 경제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채무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 성경의 채무면제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채무면제가 필요한 상황은 흉년과 전쟁 등 재난을 만나 생존을 위해 빚을 얻었으나 갚을 능력이 없을 때이다. 만일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채무자는 채무노비로 전락하고 국가적으로는 조세와 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인이 줄어들게 되며 사회 통합 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느헤미야와 문무왕의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논문에서 한국

19) 권율, 박수경,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8집 18호 (2008. 5. 13), 1-4.

20) SBS뉴스, “정부, IMF 신용불량자 10만명 오늘 대서면”,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65849> (2014. 11. 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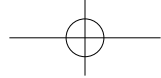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의 사례와 느헤미야의 경우를 비교 연구한 적이 있다.²¹⁾ 느헤미야의 경우, 페르시아의 지원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긴급하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흉년이 덮쳐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에서 시작하고 있다. 곡식을 빌려 굶주림을 해결하려 했으나 빚을 갚을 수 없어 자녀들이 노비로 팔려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느 5:1-5). 이에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 제사장을 불러 맹세하게 하면서 이자로 받은 물품 뿐 만 아니라 차압한 토지와 주택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주기적으로 채무면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느 5:6-13). 이렇게 반란을 겪지 않고 느헤미야 개혁이 성공한 중요한 요인은 대회를 열어 신앙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치자인 느헤미야 자신도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앙적인 대회를 통해 백성 모두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웨를 찬송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통합을 이루었다(느 5:7, 13).

신라 문무왕의 경우, 비록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지만 전쟁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였기에 백성은 굶주렸고 농사는 피폐해져 있었다. 이에 문무왕은 669년 나라의 경제적 파국과 사회적 균열을 막기 위해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부분적으로 흉년이 든 지방의 경우 왕명을 내려 채무면제를 시행하였다.²²⁾ 이러한 채무면제 조치로 인해 채권자인 귀족들이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가운데 아찬(阿飡) 대토(大吐)가 반란까지 일으켰으나 초기에 진압되는 일이 있었다.²³⁾ 그리

21) 정중호, “느헤미야와 문무왕의 이자금지과 채무면제,” 『구약논단』 51집(2014), 167-197.

22) 『三國史記』 6 신라본기 6 문무왕 9년. 其百姓貧寒 取他穀米者, 在不熟之地者, 子母俱不須還, 若在熟處者, 至今年收熟, 只還其本, 其子不須還. □ □[今月]三十日爲限, 所司奉行(백성들이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 쓴 사람으로서 흉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필요가 없고, 풍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곡식이 익을 때에 이르러 단지 원금만 갚고 그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담당 관청에서는 받들어 행하라.)

23) 『三國史記』 7 신라본기 7 문무왕 13년.



고 결국 이러한 채무면제로 인해 문무왕의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국가적인 안정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유익했음을 알 수 있었다.²⁴⁾

또 다른 채무면제 사례로서 조선시대의 정퇴(停退)를 들 수 있다. 정퇴는 환곡제도 가운데서 극심한 흉년의 경우 이자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국가가 정퇴령을 내려 원곡과 이자적인 모곡 수납을 유예하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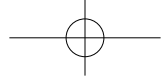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느헤미야와 문무왕, 그리고 정퇴(停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무면제 사건에는 이자금지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자금지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출 22:25-27; 레 25:35-38; 신 15:1-11; 23:19-20) 고대 바벨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이자제한 규정은 거의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졌다. 비록 간헐적으로 이자금지와 채무면제가 있었지만 주로 이자제한에 무게를 둔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이자가 문제되는 이유는 20-33%의 이율이라 하더라도 결국 고율의 이자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시점이 파종기이고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보통 추수기이기에 그 기간은 길어도 6개월인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적어도 50-100% 이상인 고율의 이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근을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는 태도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구약에서는 동족 간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무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고 금기사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고율

24) 정중호, *윗글*(2014), 191.

25) 최병선, 조병훈, “다산의 부패와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환곡제도를 둘러싼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7), 8.

26) W. F. Leemans, “The Rate of Interest in Old Babylonian Times,” *Revue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Antiquite* 3, V (1950) 8-9.



의 이자를 금지시키고 부분적으로 채무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회 안 전장을 설치하는 것이요, 추락한 사회의 구성원을 다시 회복시켜 공동 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5%로 제한하는 개정 법률이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²⁷⁾ 따라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약의 채무면제 규 정은 여전히 실시 가능한 내용이며 새롭게 해석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토지개혁

희년의 핵심은 토지에 있다. 땅에서 유리된 사람이 다시 땅으로 돌아 오는 해가 희년이다.²⁸⁾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땅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다(레 25:10). 계약법전 과 신명기 법전에서 이미 노비해방과 채무면제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근본적인 생활대책인 땅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이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땅이 주어지지 않는 계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의 경우 자원해서 종신노비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땅이 주어지는 희년법에는 종신노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희년의 핵심인 토지개혁이 과연 현실에서 실시될 수 있을까라는 의 구심을 불식시킨 사건을 한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성계의 과전 제(科田制)와 해방 후 농지개혁 사건들이며 이러한 한국의 사례에 대 해 연구한 바가 있다.²⁹⁾ 밀그롬(J. Milgrom)은 한국의 농지개혁 사건이 바로 희년이 실제적으로 실시된 예라고 하였다.³⁰⁾ 이 가운데 과전제의 경우 노비해방과 토지개혁이 함께 실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산림천택

27) 2014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5376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488#0000> (2014. 11. 12 검색).

28) “땅이 차압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레 25:10, 13).

29) 정중호, “한국 토지개혁과 희년 실시 방안,” 『장신논단』, Vol. 46 No. 2 (2014), 35-60.

30) J. Milgrom, 윗글, 2271.



(山林川澤)을 사유지로 분배하지 않고 공유(公有)로 변경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³¹⁾

고려 말 권문세가들은 토지 확대와 노비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반면 국가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신흥관료들에게 나누어 줄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성계는 토지대장을 불사르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391년에 과전법(科田法)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³²⁾ 과전제 덕분에 농민의 70%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토지개혁의 결과로 고려의 권문세가들이 몰락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조는 경제적 기틀과 정치적 지지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방 후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방 직후 남한의 총 경지면적은 232만 정보였는데 그 가운데 소작지는 80%에 달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대단하였다.³³⁾ 그리고 공산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농지개혁은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소작료 제한 조치였고,³⁴⁾ 두 번째 단계는 미군정이 귀속농지를 소작인에게 불하한 것이다.³⁵⁾ 세 번째 단계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단행된 농지개혁이다. 1950년 5월에 거의 완료된 농지개혁은 유상매수와 유상분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농지개혁 이전에 지주들이 소작지를 방매한 것까지 합치면 소작지 전체의 62%가 소농가의 손으로 넘어갔다.³⁶⁾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농지개혁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농지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지주들이 스스로 싼값으로 농지를 방매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31)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조선전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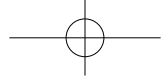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32) 윗글, 10.

33) 조선은행 조사부, 1949: 28-29

34) 황한식, 「광복과 미군정의 농업정책」 「근현대사강좌」 no. 3 (1993), 46-47.

35)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3), 82-83.

36) 신병식,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1997),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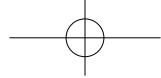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것이다. 이처럼 개혁이 실시될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한다는 것이 희년 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

3. 희년 공동체

오늘날의 희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희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인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땅’은 오늘날 ‘부동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자리와 중소기업과 재산 등 수입원을 가리킨다. 그리고 희년을 실시한다는 것은 파격적으로 이러한 수입원을 각기 가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희년을 실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공산화에 대한 위기감이었다. 마찬가지로 희년을 실시하는 동기도, 그리고 실시할 수 있는 동력도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도 공동체 파멸이라는 위기감은 희년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희년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듯이 절기로서 주기적으로 지켜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죄로 인해 백성 전체가 파멸하지 않도록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파멸하지 않도록 희년을 준수하는 것이다. 대속죄일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면 희년은 채무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채무와 이자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장악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채무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곧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대속죄일을 절기로 지키듯이 희년을 절기로 지키라는 것은 각자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의 속성상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빈부격차가 생기고 경제적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분다행이지만 비록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희년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희년은 경제면에 있어서의 자정능력의 한 부분이며 치유기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자정능력과 치유기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마치 면역성이 없는 신체와 같다는 것이다. 즉 희년이 없는 경제구조는 경제적 면역결핍증에 걸린 것과 같아서 에이즈 환자(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와 같은 신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희년 공동체란 경제정의의 기능적 부전현상이 일어날 때 희년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희년 공동체란 경제적인 치유기체가 작동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4.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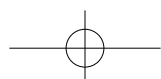
희년 공동체로서 자정능력을 발휘할 때의 모습은 사람으로만 구성된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희년이 되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요”(레 25:10, 13)라고 되어 있다. 즉 토지를 빼앗기고 밧더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며 경제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땅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땅이 차압당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튕겨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희년이 실시되어 땅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면 “그가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레 25:28) 혹은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레 25:41)라고 묘사되어 있다.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땅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희년에 자정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땅에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땅에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희년을 실행하는 모습이다.

땅이 제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안식년 규정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안식년 규정(레 25:2b-7)을 보면 땅이 안식년을 지킬 것이므로 사람도 협조하여 함께 안식년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개역개정」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레 25:2b)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사람이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안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그 땅이 야웨께 안식을 지킬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희년에도 땅은 스스로 안식한다(레 25:11-12).

그러나 땅이 안식을 하는데 사람이 협조하지 못하면 땅은 완전히 안식할 수가 없다. 안식년이요 희년인데도 사람이 무리하게 경작하려고 하면 땅은 견디지 못하고 사람에게 반격을 가한다. 즉 땅이 주민을 도저히 품을 수 없어 역겨워 주민을 토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혁명이나 전쟁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 주민이 추방당하고 피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이 뒤엎어지는 현상, 즉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현상, 땅을 소유한 자가 추방당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희년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정능력을 발휘하는 땅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희년 현상도 포함될 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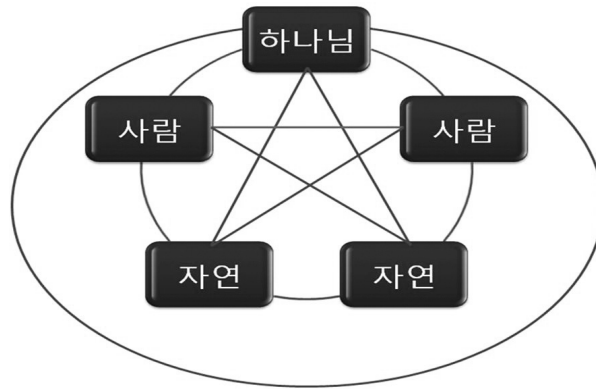




있다.

여기서 우리는 회년이라는 사건이 사람이 홀로 시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땅과 더불어 시행되는 사건이요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회년을 제정하고 땅(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에게 회년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 바로 회년 공동체의 모습이다. 회년 공동체는 구약을 관통하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³⁷⁾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스스로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연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람의 선택 여하에 따라 공동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37) 정중호, 「하나님의 공동체」(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2), 23-42.



경제정의가 무너졌다면 당연히 공동체 전체가 희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자연의 순종으로 희년이 강제로 실행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비록 사람이 희년을 실시하지 않는다 해도 희년을 실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며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사실이다. 즉 경제정의를 올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태로든 관철된다. 하나님은 경제정의를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시며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희년 공동체는 이사야 예언서에 다시 나타나는데(사 61:1-2)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한 내용(눅 4:18-19)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날이며 치유가 일어나는 날로 선포한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포한다(눅 4:21). 이러한 선포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막 1:15)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희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경제정의를 무너지고 율부짚음이 가득 찬 사회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이요 그 치유기제가 바로 희년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희년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5. 한국 희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 등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세계 역사상 주목할 만한 해방 후 농지개혁 사건도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희년이 역사 가운데 실시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희년 공동체가 일부분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의 시점에서 희년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 희년을 실시한다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주기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년 때 빨나팔을 불면서 그 때 비로소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부터 희년을 준비해서 50년째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성전에서 숭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토지를 하나님께 헌물할 때 성전의 제사장은 희년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레 27:18).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이 희년을 확신하고 매년 희년을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희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희년의 ‘기쁜 소식’, ‘은혜의 해’를 널리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레위기에는 희년은 50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은 40세를 넘기 어려웠다. 평균 수명이 40세일 때 50년 주기로 희년을 실시해야 한다면, 오늘날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100년 마다 주기적으로 희년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희년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이라 것이다.³⁸⁾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희년 현상은 주로 과거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된 것인데 비해 레위에 나타나는 희년 공동체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미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희망 공동체인 것이다.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49년의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구속자’의 역할을 격려하며, 사회가 자연스럽게 희년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인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희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희년을 제도화 하는 것이요 그 이전에 희년에 대한 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38) M.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Press, 1995), 9-10.



다행히 현재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희년 공동체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아래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신도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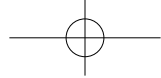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경제민주화 조항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헌법 원리로 포함된 것이며 정치경제적 폐해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³⁹⁾ 국가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⁴⁰⁾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희년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상호출자, 순환출자와 같이 지배주주경영자의 경영권을 실제 지분 이상으로 부풀려주는 관행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다.⁴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부자를 억압하고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장기적인 면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며 부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39) 광노현,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Vol.9 No.1, (1995), 240.

40)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94집 (2013), 62-75.

41) 조동성,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專門經營人研究』 제15권 제3호 (2012), 26-33.



함께 파멸하지 않고 살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희년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형태이지만 이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보다 더 절충적인 것을 찾는다면 크레이머(Mark Kramer)가 주창한 것인데 이익창출과 사회적 목적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기업 모델인 ‘공유가치창조(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을 들 수 있다.⁴²⁾ 드러커(P. F. Drucker)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중심 자본주의(people-centered capitalism)’였다.⁴³⁾ 중요한 것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희년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려는 행동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며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와 법제정에 의지해서 희년 공동체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년 공동체 정신의 확산과 희년 실시에 대한 믿음의 공유이다. 날마다 좁아져 가고 있는 지구촌에서 국경을 넘어 희년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는 민중 스스로의 자기조직화가 필요하다.⁴⁴⁾ 희년에는 개혁의 주체가 공동체 전체이다. 즉 누가 누구에게 자선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체 의식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희년을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끓어올라야 하며 공동체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바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파별로 그리고 가정 단위로 땅을 분배 받았다는 신앙이 반석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42) M. E. Porter and M. R. Kramer,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Jan/Feb. 2011), 62-77.

43) 조동성, *유허*, 39.

44) 김정주, "신자유주의의 파상과 세계경제 위기," 『진보평론』 제51호 (2012), 35.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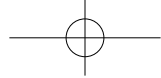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희년을 논할 때마다 당연하는 벽은 과연 희년이 현실에서 실시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염두에 두면서 희년의 내용을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으로 세분화하고 희년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실시된 한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한국적인 희년공동체 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비해방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왕건과 광종의 노비해방, 그리고 이성계의 노비해방 사건을 분석하였는데 주로 채무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노비제도는 이미 사라졌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과 채무로 인해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구약의 노비해방법을 근거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신라 문무왕의 경우와 조선시대 환곡제도 가운데 정퇴(停退)를 연구하여 구약의 채무면제 규정은 여전히 실시 가능한 내용이며 새롭게 해석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이성계의 과전제(科田制)와 해방 후 농지개혁을 연구하여, 희년이 핵심이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극빈층 뿐 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희년은 극빈층을 위한 일시적인 해결 대책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기본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요, 공동체가 과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시작되는 희년은 죄에서 자유를 얻듯이 채무와 낙오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해이며 백성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해라 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전제 하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한 후 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확인한 것을 보면 소득재분배 증대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⁴⁵⁾

희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땅이 순종하고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듯이 희년 공동체 건설을 위해 참여해야 하며, 희년이 반드시 실시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世宗實錄」

「太祖實錄」

곽노현,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Vol.9 No.1, (1995), 239-244.

권병탁, “농지개혁의 긍정적 의의,” 「쟁점 한국근현대사」 3권(1993), 109-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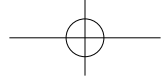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권율, 박수경,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8집 18호(2008. 5. 13), 1-4.

김정주, “신자유주의의 파상과 세계경제 위기,” 「진보평론」 제51호 (2012), 1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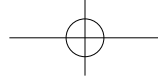
45) 채구묵, 김철주,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OECD 17개국의 소득재분배 수준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사회학」 제42집 5호 (2008), 34-36.



-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94집 (2013), 62-75.
- 신병식,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1997), 25-46.
-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조선전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이대근, 「해방후 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연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종근, “히브리 성서의 희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름 제도,” 「구약논단」 1집(1995), 75-90.
- 정중호,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구약논단」 43집(2012), 154-177.
- _____, “구약의 노비관과 조선 초기 천민사상(天民思想),” 「구약논단」 48집(2013), 167-194.
- _____, “느헤미야와 문무왕의 이자금지와 채무면제,” 「구약논단」 51집(2014), 167-197.
- _____, 「레위기-만남과 나눔의 장」 한들출판사, 1999.
- _____,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제44집(2012), 178-201.
- _____, 「하나님의 공동체」 계명대학교출판부, 2012.
- _____, “한국 토지개혁과 희년 실시 방안,” 「장신논단」 Vol. 46 No. 2(2014), 35-60.
- 조동성,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專門經營人研究」 제15권 제3호(2012), 23-47.
- 지승중, “朝鮮前期의 投托과 壓良爲賤,” 「사회와 역사」 제8권(1987.12), 11-39.
- 진노 나오히코(神野直彦), 정광민 역,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서울:



- 푸른지식, 2013.
- 채구묵, 김철주,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OECD 17개국의 소득 재분배 수준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사회학」 제42집 5호 (2008), 1-30.
- 최병선, 조병훈, “다산의 부패와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환곡제도를 둘러싼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07 No.0 (2007), 1-31.
- 황한식, “광복과 미군정의 농업정책,” 「근현대사강좌」 no. 3(1993), 41-55.
- Bergsma, J. S., “The Jubilee from Leviticus to Qumran: Its Origin, Development, and Interpretation in the Hebrew Scriptures, Second Temple Literature, and Qumran Texts,”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2004.
- Chaney, Marvin L., “Debt Easement in Israelite History and Tradition,” in David Jobling et al (eds), *The Bible and the politics of exegesis: essays in honor of Norman K. Gottwald on his sixty-fifth birthday* (Cleveland: Pilgrim Press, 1991), 127-139.
- Chirichigno, G. C.,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Glass, Zipporah G.,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OT* 91 (2000), 27-39.
- Gottwald, N. K., “The Biblical Jubilee: In Whose Interests?” Hans Ucko ed. *The Jubilee Challenge: Utopia or Possibility?* (Geneva: WCC Publications, 1997), 36-38.
- Knauth, Robin J. DeWitt, “The Jubilee Transformation: From Social Welfare to Hope of Restoration to Eschatological Salvation.”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4.



- Leemans, W. F., "The Rate of Interest in Old Babylonian Times,"
Revue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Antiquite 3, V (1950), 7-34.
- Lemche, N. P., "The manumission of slaves the fallow year the
sabbatical year the jubel year," *VT* 26 (1976), 38-59.
- Milgrom, J.,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 Porter, M. E. and M. R. Kramer,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Jan/Feb. 2011), 62-77.
- Ucko, Hans ed., *The Jubilee Challenge: Utopia or Possibility?*
Geneva: WCC Publications, 1997.
- Weinfeld, M.,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Magnes Press, 1995.

검색어

희년 공동체
한국 역사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
하나님의 공동체



The Jubilee Community and Korea: Slave Emancipation, Debt Relief, and Land Reform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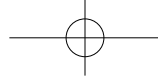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Keimyung University

Discussions regarding the Jubilee have constantly evoked doubts as to its feasibility. With this in mind, I analyse the Jubilee in terms of slave emancipation, debt relief, and land reform, with special focus on the case of Korea. In conclusion, I propose a new direction for building a Korean Jubilee community

Regarding the case of slave emancipation, I analyse emancipations by King Wanggun, King Gwangjong, and Sung-ge Lee and find out that they emancipated debt slaves. Although the system of slavery has long been abolished, our society still faces the problem of people struggling with debt and a poor working environment. I suggest a resolution based on the manumission laws of the Old Testament.

Concerning debt relief, I study the cases of King Munmu of the ancient Shilla dynasty and Jeongtoe(停退) in the Hwangok system. I find out that the debt relief law of the Old Testament is still operable and can be used to create a healthy community.

Regarding land reform, I analyse the Gwazeonze(科田制) of Sung-ge Lee and the land reform after the Korean liberation. I conclude that the Jubilee system is a key to establishing a fundamental life value and to restoring health of an entire community, including the poor as well as the



middle class.

The Jubilee was not a temporary solution for the poorest, but it recurred periodically and reformed the basic economic structure of the entire community. The Jubilee opens a way to life for the community and avoids its being destroyed. The Jubilee community is a community of God initiated by Him, with the land obeying and awaiting the choice of humans. And further, the community can also be connected to the kingdom of God. As participants in the kingdom of God we should b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Jubilee community, and share, most importantly of all, a firm belief that the Jubilee can be carried out.

Keywords

Jubilee community

history of Korea

slave emancipation

debt relief

land reform

community of God

■ 투고일: 2015년 01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2월 06일

